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사)환경정의

환경 민주주의 평가발표회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 일시 | 2019. 11. 28(목) 오후2시
- 장소 | 광화문1번가 서울열린소통포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 주최 | (사)환경정의

*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02-743-4747)

*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환경정의연구소

2019. 11. 28 광화문1번가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 개요

- (일시·장소) 2019. 11. 28(목) 2:00~ 4:30/ 광화문1번가 서울열린소통포럼
- (주관)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 (주최) (사)환경정의

□ 세부 계획

14:00~ 15:00 세션 1. 환경민주주의 결과 발표

진행 사회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국장

환경민주주의 평가 추진 경과 소개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 발표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환경민주주의 시민평가 결과 발표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15:00~15:20 휴식

15:20~16:20 세션 2.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우리시대 과제

좌장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법학회 회장

지정토론 (각 10분)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한신대 교수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종합토론

16:20~16:30 마무리

□ 차 례 /

I. 환경민주주의 평가 소개	1
II.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	5
III.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35
IV. 토론문	53
V. 부록	67
환경민주주의 평가 위원	69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활동가 설문지	70

I

환경민주주의 평가 소개



환경민주주의 평가 소개

환경정의와 환경민주주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환경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 받고,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배분에 있어 공평하게 대우받으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받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과정은 인종이나 직업 혹은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하며, 환경 의사 결정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OECD는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환경성과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도시와 농촌간 환경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적 정의가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불평등을 줄여 환경불평등을 줄여나가고 환경 의사 결정과정에 지역주민, 일반 대중과 NGO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리우선언 제10원칙이 한국에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해 환경의사결정에 공공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의 법적 시행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는 환경과 관련된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충분하면서도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며, 그러한 절차 실행을 위해 유의미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환경민주주의 주요한 세 가지 원칙인 환경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의사결정 과정에 유의미한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환경법률의 시행 또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 환경민주주의 현황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었습니다.

환경민주주의 평가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자원연구소의 환경민주주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환경민주주의 관련 국제 협약인 오르후스협약 주요 가입국 등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법과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환경활동가들이 체감하고 있는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함께 조사하여 우리 사회의 법과 정책 그리고 현실의 환경민주주의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환경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민주주의 평가 절차>

구분	주요 활동 내용	비고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법률 평가)	평가 준비	- 세계자원연구소 환경민주주의 지표 번역 및 활용 문의 -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세미나	2월~ 5월~
	평가 및 검토	- 1차 평가 : 평가위원 개별 평가 후 결과 검토를 위한 세미나 개최	5월~9월
		- 2차 평가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 : 1차 평가위원 외 새로운 전문가 참여	
		- 평가 결과 확인 : 1, 2차 평가 점수 확인 및 재 검토 - 최종 평가 점수 확정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환경활동가 설문 (시민평가)	평가 준비	-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설문 설계	
	평가 및 분석	- 환경활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민주주의 평가 설문 실시 - 설문결과의 분석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	발표	- 최종 결과 발표회	11월

II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

II //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 발표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변호사 박 창 신

I. 왜 환경민주주의인가?

2019. 3. 5. 한국은행은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면서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달러화 기준 3만1349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들 중에서 1인당 GNI 3만달러를 달성한 곳은 6개국(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뿐이라고 합니다¹⁾.

1960년 4. 19.혁명, 1987년 6. 10.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헌법이 개정된 후, 1993년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더욱 커져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2018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²⁾는 10점 만점에 8점으로 167개국 중 21위라고 합니다³⁾.

위와 같은 뉴스를 보면,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에 포함되어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0515270474324&outlink=1&ref=htt p%3A%2F%2Fsearch.daum.net>
 2)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로 평가한다.
 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91917&plink=ORI&cooper=DAU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헌법 제1장 제1조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최악의 고용 불안과 임금 불평등, 임금 격차, 노동 시간 2위, 가장 짧은 수면시간, 원자력발전소 인구 밀도 세계 1위, 지구행복지수 60위, 사법 신뢰도 42개국 중 39위, 언론자유지수 70위……, 온갖 통계 수치는 대한민국이 위험사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갈수록 진보하지 못하고 위험사회로 들어가는 것일까요⁴⁾?

겉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보이나,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불평등’하고 ‘권위’적인 것이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특히 우리 생존의 기본적인 물리적 토대가 되는 환경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원자력 위험,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위험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된 정보를 통하여 결정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집행되고 있는 정책을 사법단계에서 바로잡히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환경정의연구소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에 관한 민주주의는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만의 독자적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만의 독자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평가방법 개발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에 통용되는 평가 방법이 있는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금번 환경정의연구소가 평가방법으로 차용한 EDI(Environmental Democracy Index)는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

소)가 세계 70여 개국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평가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EDI 평가 지표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 2019년 한국의 환경민주주의지수

1. EDI(환경민주주의 지수) 및 평가지표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세계 각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국제 환경전문 연구기관으로 미국, 브라질, 중국, 유럽, 인도, 멕시코 등 5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에너지, 기후, 식량, 수자원, 산림 등 환경과 복지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⁵⁾.

WRI의 환경민주주의 지표⁶⁾는 UNEP의 발리 가이드라인을 어떠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75개 법적지표로 평가대상국가의 법을 평가하고 24개 시행지표로 이행정도를 평가합니다.

위 75개 법적 지표 및 24개 실천지표는 크게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참여권, 사법적 접근권 3개의 분야로 구분됩니다. 정보접근권은 법적 지표 6개(세부 법적지표 문항 21개), 시행지표 2개(세부 시행지표 문항 4개), 의사결정참여권은 법적지표 6개(세부 법적지표 문항 15개), 시행지표 3개(세부 시행지표 문항 7개), 사법적 접근권은 법적지표 11개(세부 법적지표 문항 39개), 시행지표 3개(세부 시행지표 문항 13

4) 위 단락은 “대한민국헌법, 더휴먼, 2016. 7. 22., 7면에서 8면”에서 발췌하였다.

5) 세계자원연구소는 “한국환경공단은 자체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오는 19일 세계자원연구소(WRI)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고 보도(<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118010006103>)되는 등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입니다.

개)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각 문항은 본 발표문 말미에 별지로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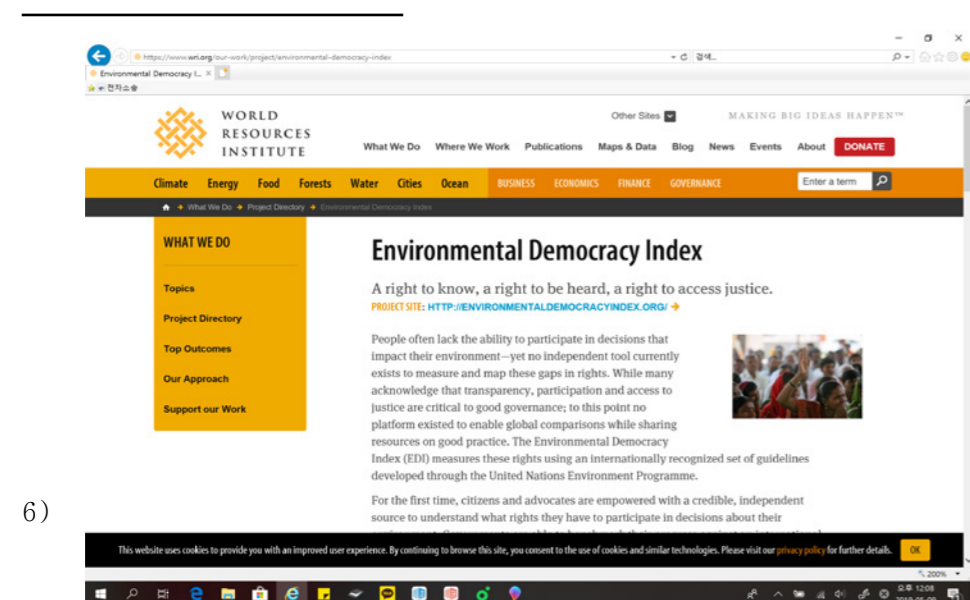
2. 금번 EDI 평가

금번 EDI 평가에서, 1차 과정에서 19명의 변호사가 문항을 나누어 평가하였고, 2차 과정에서 1차 과정에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3명의 법학박사(교수 2인, 정책 연구기관 연구위원 1인)가 다시 평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한 이유는 1차 과정에서 법률가 집단 중 실제 소송을 토대로 현행법을 접하고 있는 실무가를 통하여 실제 체감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고, 2차 과정에서는 법률가 집단 중 이론에 정통한 법학교수 및 연구위원을 통하여 1차 과정의 평가 결과에 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실무적인 면 이외에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총점에서 1차 과정 및 2차 과정의 평가 결과는 각 1.49와 1.48로 거의 일치하는 수치를 보였고, 3개의 분야별로는 정보접근권과 의사결정참여권 부분에서는 동일한 수치를, 나머지 사법적접근권 분야에서 점수가 다소 상이하였습니다. 2차 과정 까지 거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표 1. 금번 EDI 평가 결과 및 주요 비교 국가의 수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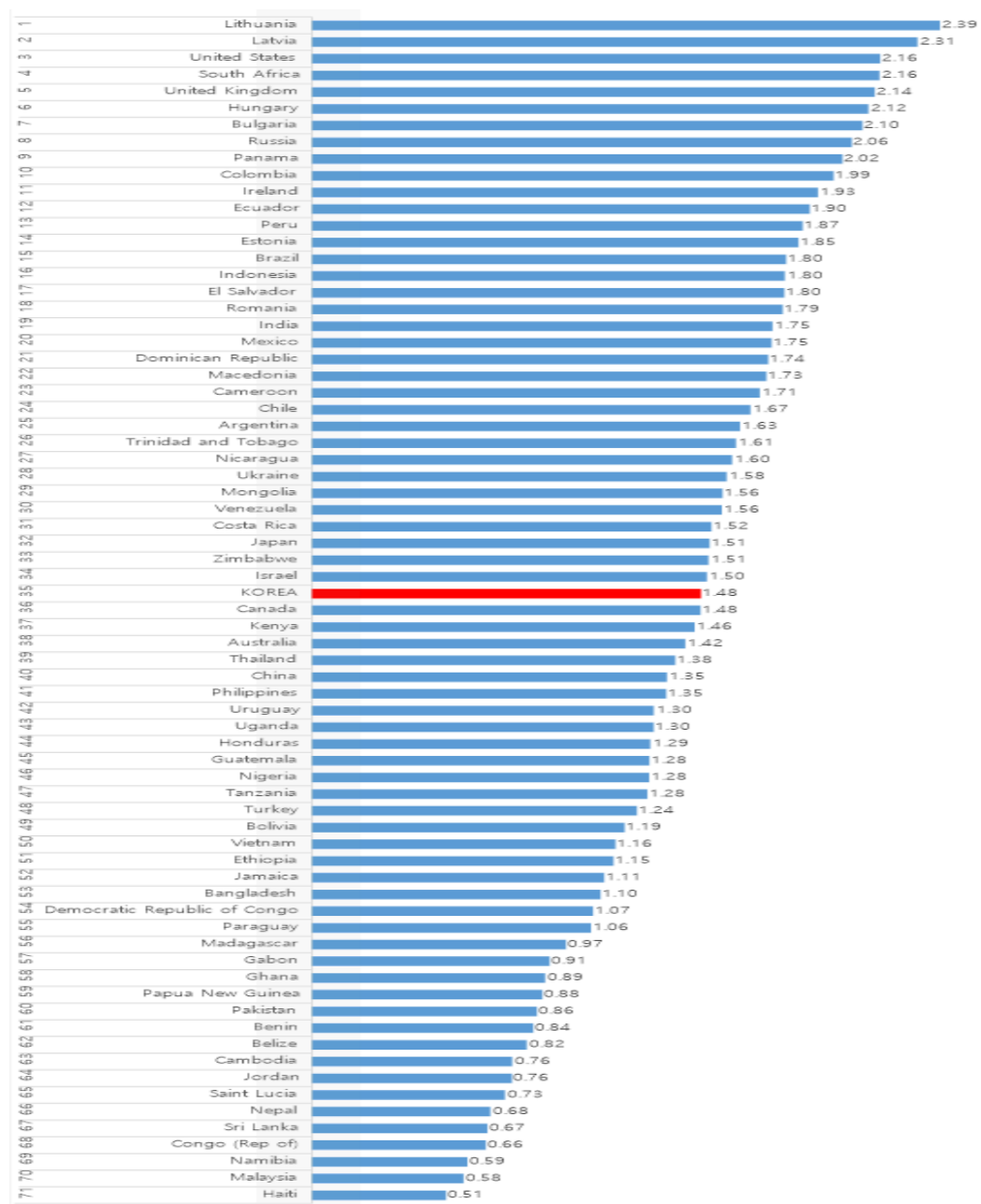
범주	지표	한국		Lithuania	USA	China	Japan
		1차	2차				
정보 접근권	1. 이해관계 증명없이 정보 요청 할 수 있는가	2.67	2.67	2.67	2.83	2.33	2.5
	2. 공공영역의 환경정보	2.25	2.25	3	3	2.5	2.5
	3. 거절의 근거	1.67	1.67	2.67	2.33	1.33	2.67
	4. 환경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	2.33	2.33	3	3	1.67	2.33
	5. 환경상태보고서	2	2	2.75	0	0.75	1.75
	6. 조기경고 정보	1	1	2	3	2	0
	시행 : 2점 3개/0점 1개						
		1.99	1.99	2.68	2.36	1.76	1.96
의사 결정 참여권	8. 조기공공참여	1	1	2	2.33	1.33	1.0
	9. 사전공공협의	1	1	2	1.5	1	1
	10. 정보에 근거한 참여	0.33	0.33	2	1.67	1	0.67
	11. 대중 의견 수렴	1	1	2.5	2.5	1.5	1.5
	12. 검토과정에서 공공참여	0	0	1	2	1	1
	13. 대중의 의견을 규칙 제정에 통합시키기	1.5	1.5	3	2.5	0.5	1.5
시행:2점 2개/1점 3개/0점 2개							
		0.81	0.81	2.08	2.08	1.06	1.11
사법적 접근권	15. 정보공개 청구	3	3	3	3	1.33	3.0
	16. 공공참여 항소	1.67	1.67	3	3	1	2.33
	17. 대중의 이익제기 권리	2	2	2.25	2	1	1
	18. 정당성에 대한 해석	1	1	3	1	1	1
	19. 공공적이고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인 검토	1	1	3	2	1.4	2.2
	20. 합리적 비용의 구제책접근	0.75	1.5	1.25	0.5	0.5	1.5
	21. 즉각적 효과가 있는 구제책	2.33	1	3	1.83	1.5	1.67
	22. 효과적인 시행	2.83	2.67	3	2.5	2	2.0
	23. 구제책에 대한 인식, 교육	0.5	1	1	2.5	1.5	0
	24. 사법, 행정결정에 대한 대중의 열람권	2.67	2.33	3	2.67	1.33	1
26.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적 분할 해결	0.5	1	1	1.5	1	0.5	
시행:2점 7개/1점 2개/0점 4개							
		1.66	1.65	2.41	2.05	1.23	1.47
총점		1.49	1.48	2.39	2.16	1.35	1.51
시행 지표	2점 그렇다	12	12	16	20	5	18
	1점 제한적으로 그렇다	4	5	2	3	9	2
	0점 아니다	8	7	6	1	10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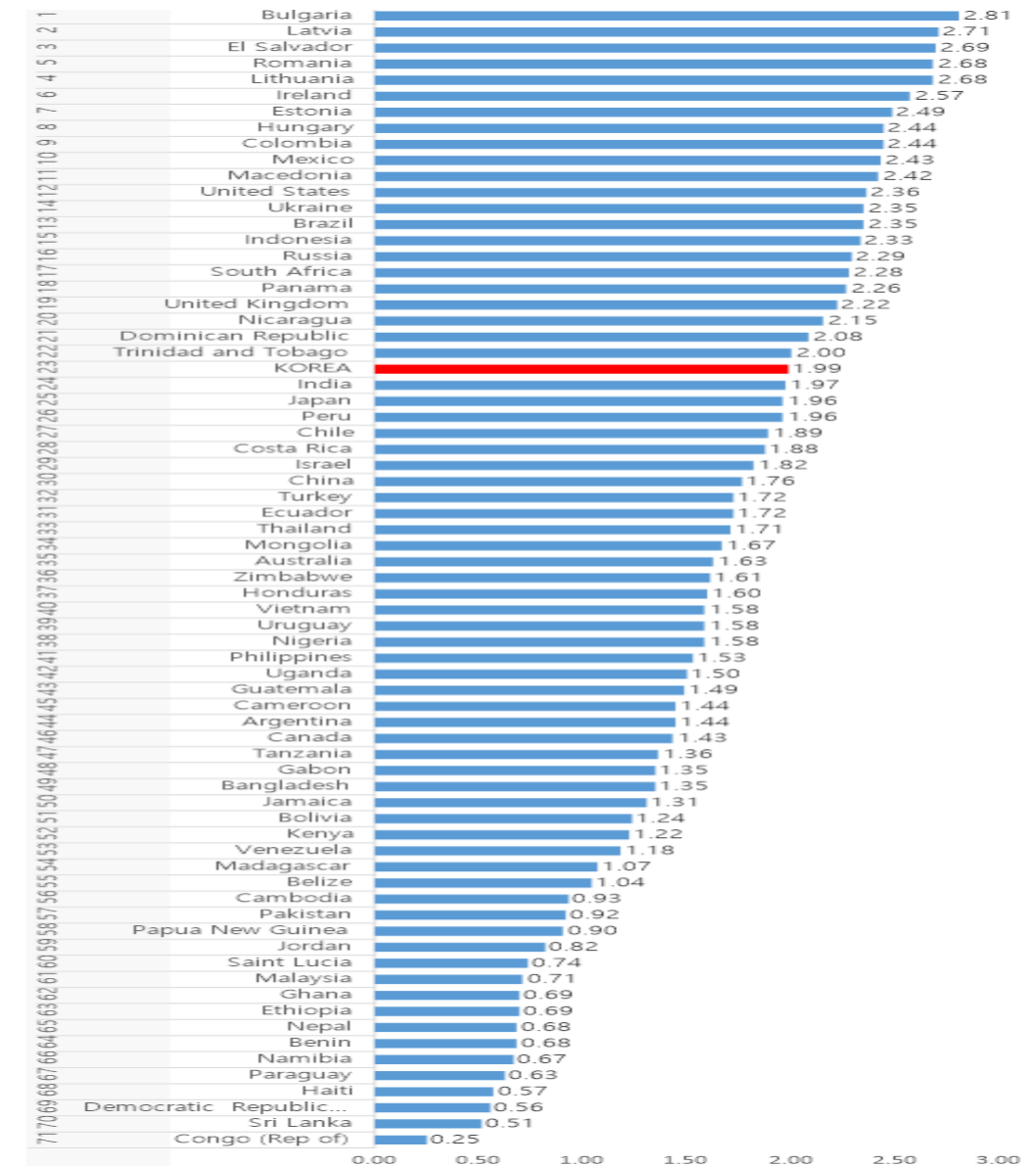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관한 총점은 1.48(2차 평가 기준, 아래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이상 모두 2차 평가 기준 점수를 표기한 것입니다)입니다. 정보 접근권 부문에서는 1.99, 의사결정참여권 부문에서는 0.81, 사법적 접근권 부문에서는 1.65로 평가되었습니다.

< 그림1. 총점 기준 배치도 >



각국의 법제가 다르고 실제 시행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워 단순 비교가 어려우나(이러한 부분에 관하여는 우리와 유사법제를 지니고 있는 국가를 위주로 구체적인 분석을 추후에 하고자 합니다), 위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총점 평가 결과인 1.48은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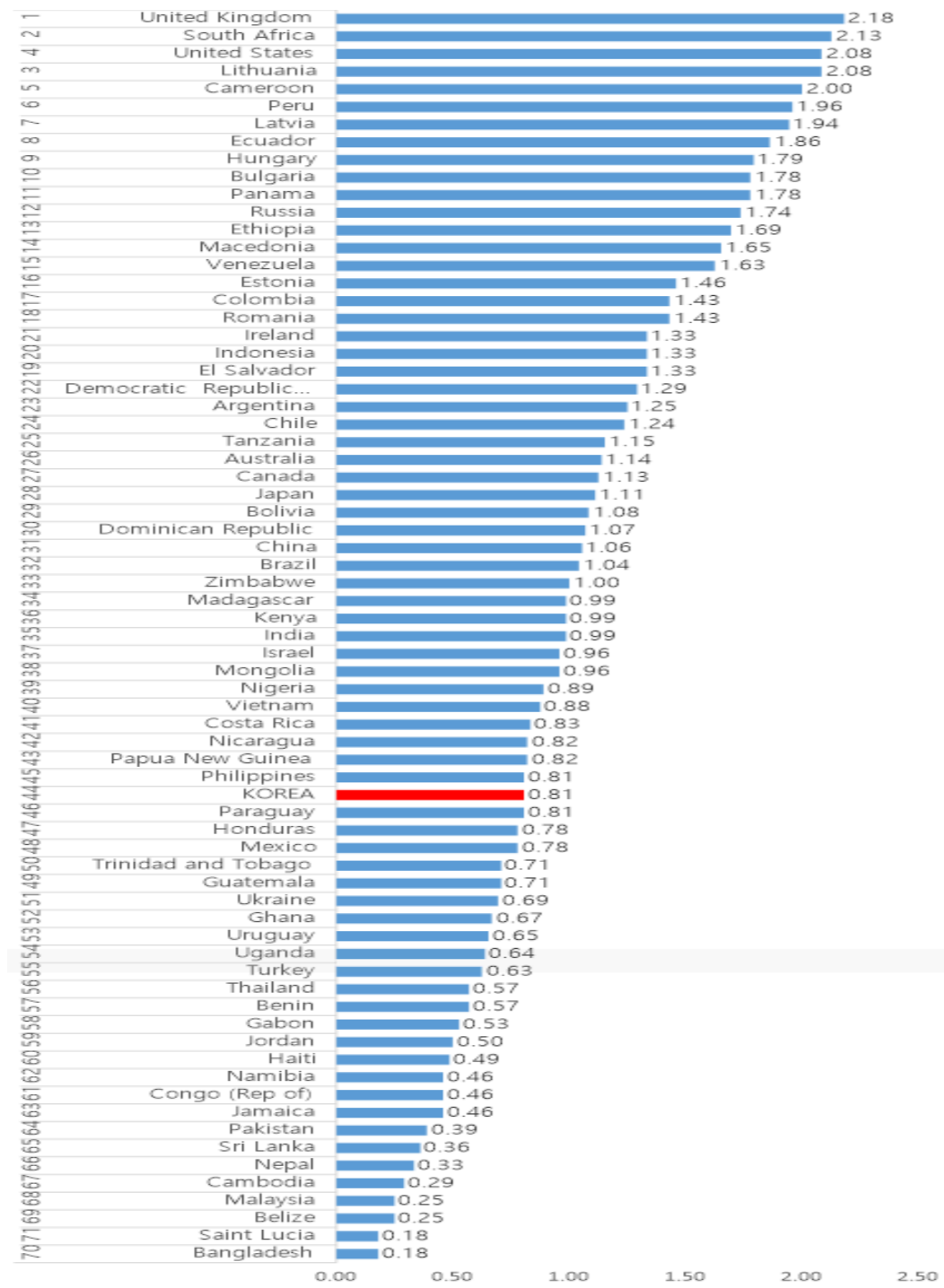
< 그림 2. 정보접근권 기준 배치도 >



위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접근권에 관한 평가점수는 1.99로서 전체 71

개국 중 23위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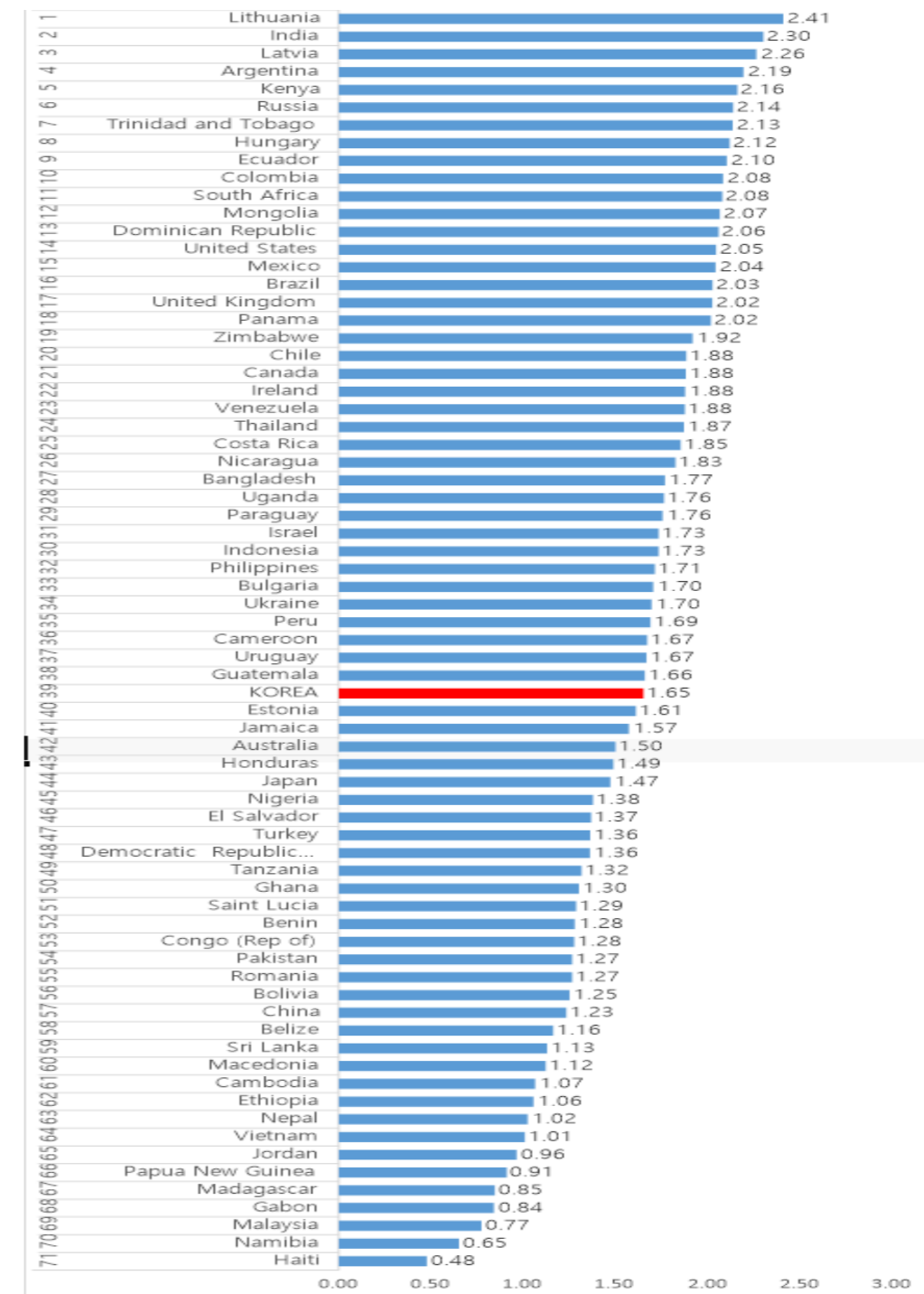
< 그림 3. 의사결정참여권 기준 배치도 >



위 그림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참여권에 관한 평가점수는 0.81로 전체

71개국 중 44위에 해당합니다.

< 그림 4. 사법적 접근권 기준 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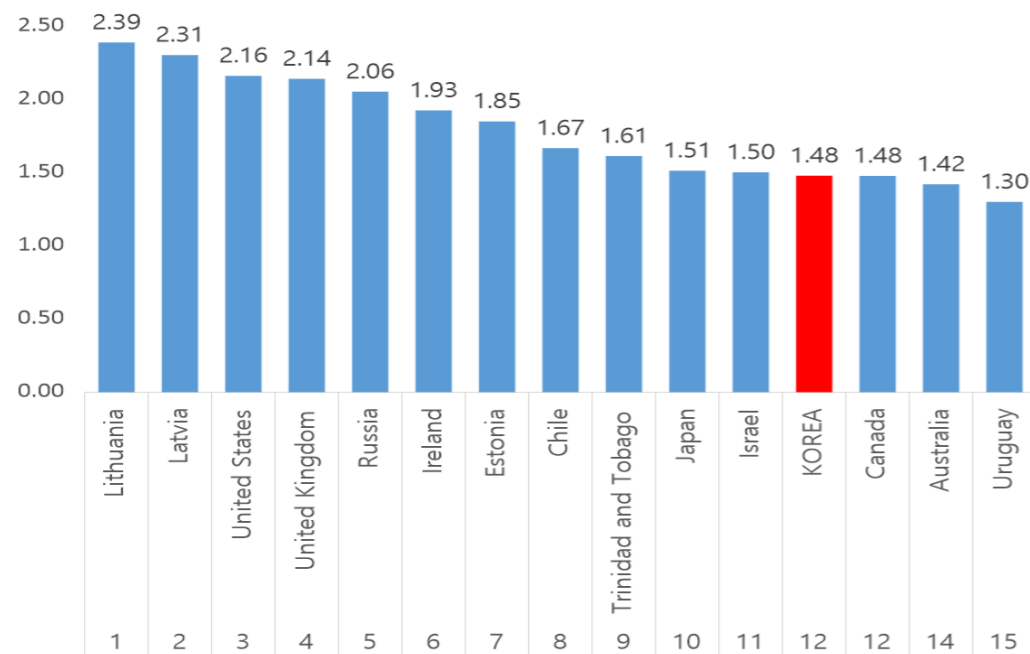


위 그림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법적접근권에 관한 평가점수는 1.65로서 전체 71개국 중 39위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전체 EDI 평가 지수는 총점 기준 전체 71개국 중 35위인데, 부문별 순위는 정보접근권 기준 23위, 의사결정참여권 기준 44위, 사법적 접근권 기준 39위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지수가 평가국 71개국 평균에 비하여 낮게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은 의사결정참여권과 사법적 접근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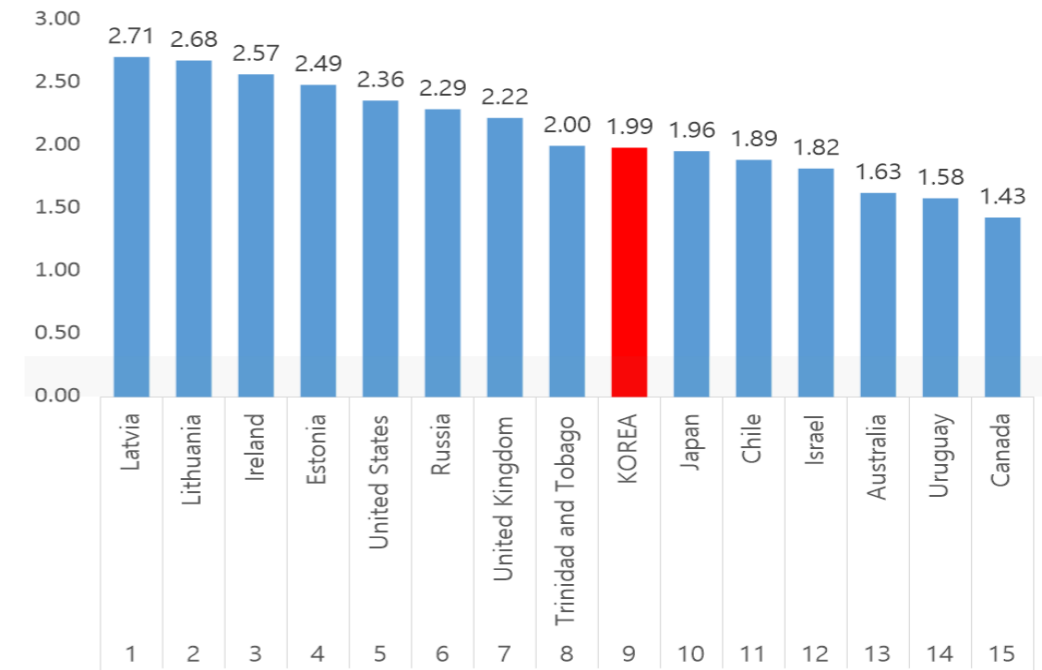
위와 같은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국가의 법제도가 신뢰성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보다 신뢰성 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소득 국가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그림 5. 고소득 국가별 총점 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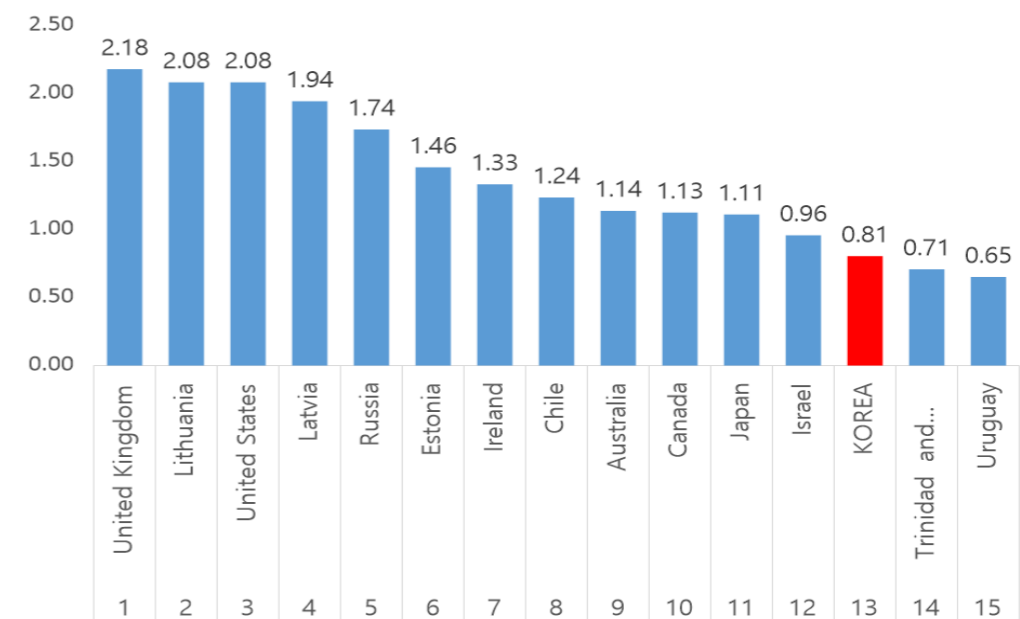
고소득 국가 15개국을 기준으로 보면, 총점 기준 우리나라는 1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림 6. 고소득 국가별 정보접근권 부문 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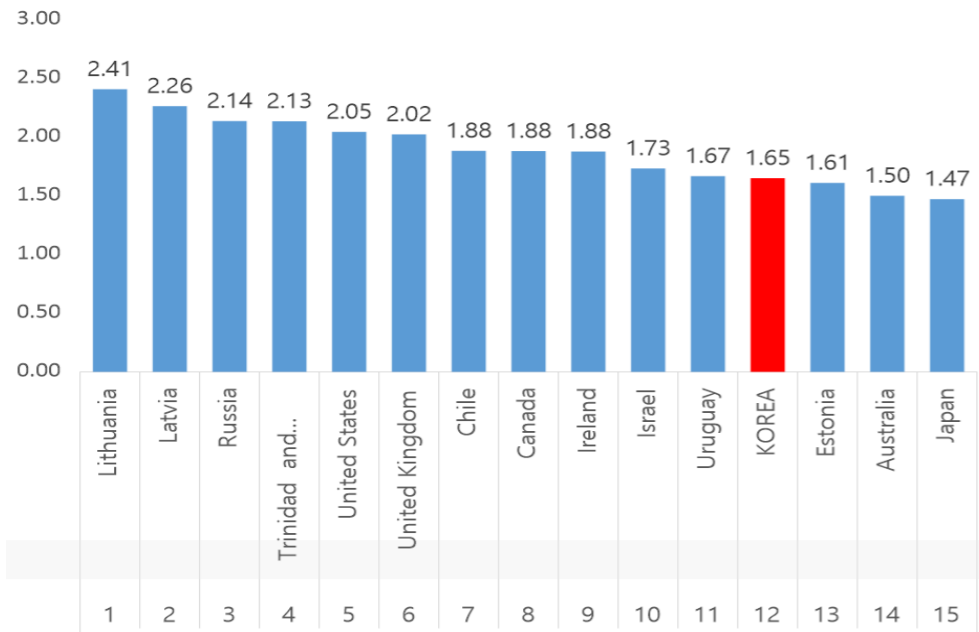


정보접근권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 15개국 중 9위로 중위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그림 7. 고소득 국가별 의사결정참여권 부문 배치도 >



< 그림 8. 고소득 국가별 사법접근권 부문 배치도 >



위 그림 7과 그림 8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고소득 국가 15개국 중 우리나라는 의사결정참여권에서 13위, 사법접근권에서 12위로 하위권에 위치해있습니다.

위 결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지수가 평가국 71개국 평균에 비하여 낮게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은 의사결정참여권과 사법적 접근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표 2. EDI 평가국 중 오르후스 협약 가입 국가의 점수 >

Country	Region	Income level	Income level normalized (5=High Income OECD; 1=Low income)	Aarhus	OGP	Federal/unitary	P26.2	P26.1	Guideline 26-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Environmental Issues	Justice Pillar Score	Overall Score
Lithuania	Europe	High income: OECD	5	Aarhus	OGP	Unitary	1	0	1	2.41	2.39
Latvia	Europe	High income: OECD	5	Aarhus	OGP	Unitary	1	0	1	2.26	2.31
United Kingdom	Europe	High income: OECD	5	Aarhus	OGP	Unitary	1	0	2	2.02	2.14
Hungary	Europe	Upper middle income	3	Aarhus	OGP	Unitary	2	0	2.5	2.12	2.12
Bulgaria	Europe	Upper middle income	3	Aarhus	OGP	Unitary	1	0	1.5	1.70	2.10
Ireland	Europe	High income: OECD	5	Aarhus	OGP	Unitary	1	0	1.5	1.88	1.93
Estonia	Europe	High income: OECD	5	Aarhus	OGP	Unitary	0	0	0.5	1.61	1.85
Romania	Europe	Upper middle income	3	Aarhus	OGP	Unitary	0	0	0	1.27	1.79
Macedonia	Europe	Upper middle income	3	Aarhus	OGP	Unitary	0	0	1	1.12	1.73
Ukraine	Europe	Lower middle income	2	Aarhus	OGP	Unitary	0	0	0	1.70	1.58

위 표2.는 EDI 평가국 71개국 중 오르후스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에 관한 점수표인데,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는 고소득 국가 15개국 중 각각 1, 2, 4, 6, 7위로 상위권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오르후스 협약이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참여권, 사법적 접근권에 관한 보장의 정도를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국내법제도를 협약의 내용에 맞게 제·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표1.에서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과의 수치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정보접근권에서 일본의 1.96 보다 다소 높은 1.99를, 의사결정참여권에서 일본의 1.11 보다 낮은 0.81을, 사법적 접근권에서 일본의 1.47보다 높은 1.65를 획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1.51인 반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48(2차 평가 기준)을 획득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소득 국가, 특히 오르후스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과 달리 우리와 유사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는 의사결정참여권에서 보장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는 우리의 법제도가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참여권을 보장하는 정도가 낮고, 잘못된 정책이나 환경부정의를 시정할 수 있는 사법적접근권에 관하여도 보장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III. 나가며 - 환경민주주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관한 사업과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잘못된 사업과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사법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여만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공허한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한 국내법제 개선, 오르후스 협약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소송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지 환경민주주의 지수 지표

I. 정보 접근권

1. 환경정보청구의 가능성

법적 지표
1. 법률이 환경정보청구에 대해 어느 정도로 접근을 의무화하고 있는가?
2. 자연인이나 법인이 환경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3. 합리적인 비용으로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4. 시의 적절하게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5. 법이 환경정보에의 접근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어느정도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6.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때, 법률이 법적 이해 관계 등의 입증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가?

2. 공공 영역의 환경 정보

법적 지표
1. 법률이 환경질에 관한 정보가 공중에게 어느정도로 사전적으로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2. 건강에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정보를 공공영역에 공개할 것을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3. 환경법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공 영역에 공개할 것을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4. 환경 관련 정보 취득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공공에게 제공할 것을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시행 지표
1. 해당 정부가 국가 수도의 실시간 대기질 데이터를 온라인에 공개하는가?
2. 정부 혹은 국가 수도의 지방 정부가 지난 2년간 상수도용 식수 품질 연간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적으로 제공했는가? 또한 연간 데이터는 투명성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이 정한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가?

3. 거절의 근거

법적 지표
1. 환경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거부사유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가?
2. 정보 공개 거부사유에 포함된 정보가 그 외 다른 정보와는 분리된 후 공개청구자에게 전달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3. 공개여부 결정자가 정보공개 거부사유를 고려할 때,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을 참작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4. 환경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적 지표
1.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연관성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갱신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2. 공공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주체에 의한 환경성과와 준수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갱신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3.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존의 활동 및 새롭게 제안된 활동에 관한 적절한 공공정보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시행 지표
1. 자국의 국가 기관은 일일 대기 오염물질 배출과 시설적인 측면에서 큰 규모의 산업에서 방류되는 폐수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공공등록부 혹은 도서관에 공개하도록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는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가?

5. 환경 상태 보고서

법적 지표
1. 정부가 환경 상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2. 환경상태보고서를 일정 주기로 공개하는 것을 법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가?
3. 보고서에 최신 정보가 포함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4. 보고서에 포괄적인 정보가 포함될 것을 법이 요구하는가?

시행 지표
1. 지난 10년간 국가기관이 정기적으로 환경상태 보고서를 공개했는가?(정기적이라 함은 5년 마다 더 자주를 의미한다)

6. 조기 경보 정보

법적 지표
1. 인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이 임박한 경우, 즉각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7. 지표 없음

II. 공공 참여

8. 조기 공공 참여

법적 지표
1. 이해관계 있는 대중이 환경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2.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이 조기에 참여할 기회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3. 의사결정 과정에 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 있는 대중이 제공받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시행 지표
1.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승인된 개발 프로젝트 중(언론보도, 예상비용, 프로젝트 수입의 측면에서) 논란이 된 세 가지를 선정하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의견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는가? 혹은 권한 위임을 했는가?

9. 사전 공공 협의

법적 지표
1.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면허, 채광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정책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국가 혹은 국가기관에게 공공참여를 위한 사전 활동을 할 것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2.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면허, 채광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 정책 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국가 혹은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이해관계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10. 정보에 근거한 참여

법적 지표
1.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 면허, 채광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 정책 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모든 환경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 있는 공중에게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2.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면허, 채광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정책 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이해관계 있는 대중에게 사전에 환경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가?
3.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면허, 채광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정책 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이해관계 있는 대중에게 사전에 환경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 있는 대중에게 사전에 시의 적절하게 공개하도록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시행 지표
1. 개발프로젝트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가 온라인으로 혹은 국가 기관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가?
2. 폐수 관리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가 위반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으로 혹은 국가기관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가?
3. 채광산업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으로 혹은 국가기관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가?
4. 지난 3년간 산림이용계약 허가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가?
5. 산림이용계약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혹은 국가기관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가?

11. 대중 의견 수렴

법적 지표
1.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 면허, 채광 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 정책 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국가 혹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2.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면허, 채광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 정책 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환경 관련 결정을 공개하도록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시행 지표
1. 최근 3년간 있었던 큰 규모의 채광 혹은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관련 정부 기관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을 준 경우가 있는가?

12. 검토과정에서의 공공 참여

법적 지표
1. 이전에는 환경적으로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면허, 채광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 정책 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국가 혹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환경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대중의 검토 절차를 포함시키도록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13. 대중의 의견을 규칙 제정에 통합시키기

법적 지표
1.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규칙 제정 또는 하위규정의 준비 등)의 준비 과정 중 적절한 단계에 대중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2.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면허, 채광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 정책 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국가 또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정책 준비 과정 중 적절한 단계에 대중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3. 환경영향평가, 오염규제, 산림면허, 채광산업,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환경 정책 입안과 관련된 법률이, 환경과 관련된 계획의 준비 과정 중 적절한 단계에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4. 법률이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준비 과정 중 적절한 단계에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14. 지표 없음

III. 사법 접근권

15. 정보 공개 이의신청

법적 지표
1. 환경 정보에 대한 요청이 반려된 경우, (환경영향평가·오염규제 및 허가·산림 관련 면제·채취 산업·생물다양성 보호 및 환경 정책 입안에 관련된 법률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2. 법률이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3. 환경 정보에 대한 요청이 반려된 경우, 법원 또는 기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권리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시행 지표
1. 환경 정보 관련 반려건에 대해 이뤄지는 소송 제기를 접수하고 처리할 법정, 재판소 또는 기타 독립적이거나 공정한 기관이 실재하는 사무소의 형태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가?

16. 공공 참여 이의신청

법적 지표
1. 공공참여의 대상이 되는 환경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정·행위·누락의 실제법상 적법성에 대해, 관련된 대중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2. 공공참여의 대상이 되는 환경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정·행위·누락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관련된 대중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3. 실제법상 적법성 및 또는 절차상 적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때, 이에 대하여 법정 또는 기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심리를 진행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시행 지표
1. 지난 5년 내에 공익과 관련된 환경 또는 천연 자원 관련 사례들이 법정·재판소·기타 기관을 통해 소송 제기된 경우가 있었는가? 만일 법정기록이 공적 정보가 아닌 경우,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라.

17.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행위에 대해 대중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

법적 지표
1. 공권력에 의해 내려진 결정·행위·부작위가 있고 이것이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 절차법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대중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2. 민간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행위·부작위가 있고 이것이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 실제법 규범을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관련된 대중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3. 민간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행위·부작위가 있고 이것이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 절차법적 요건을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대중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4. 지표 1-3에서 언급된 이의 제기 사항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다루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가?

시행 지표
1. 지난 5년 내에 시민 사회가 오염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가?
2. 지난 5년 내에 시민 사회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정책·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가?

18. 광범위한 원고적격

법적 지표
1.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서 법률이 원고적격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가?

시행 지표
1. 지난 5년 내에 비정부 기구들이 공익과 관련된 환경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원고 적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가?

19.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며 독립적인 불복절차

법적 지표
1.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결정들의 시행에 대하여, 법원 또는 기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을 통한 시의적절한 불복이 이뤄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2.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결정들의 시행에 대한 불복절차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3.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결정들의 시행에 대한 불복절차가 시의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4.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결정들의 시행에 대한 불복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5.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결정들의 시행에 대한 불복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시행 지표
1. 지난 5년 내에 환경과 관련된 법률 및 결정들을 위반한 일로 인해 법원 또는 기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부터 내려진 제재 또는 시정 명령이 있었는가?

20. 구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의 접근

법적 지표
1. 이해관계 있는 대중이 환경과 관련된 불복절차에 접근할 때 그 비용이 엄두도 못할 정도로 비싸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2. 사법접근권에 대한 젠더 관련 재정적인 장벽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는가?
3. 사법 접근권에 대한 젠더 관련 비재정적인 장벽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는가?
4. 사법 접근권에 대하여 재정이나 젠더 문제와 무관한 기타 다른 종류의 장벽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는가?

시행 지표
1. 지난 5년 내에 환경 또는 천연 자원에 연관되었으며 정부의 법적 지원을 받는 공익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2. 지난 5년 내에 환경 또는 천연 자원에 연관된 소송이 있었고 또한 공익 고소인/원고/청원자에 반하여 그 절차 비용이 지급된 적이 있었는가?
3. 지난 5년 내에 환경 또는 천연 자원에 연관된 소송이 있었고 또한 공익 고소인/원고/청원자에 대하여 그 절차 비용이 지급된 적이 있었는가?
3. 지난 5년 내에 환경 또는 천연 자원에 연관된 소송이 있었고 또한 공익고소인/원고/청원자에 대하여 그 절차 비용이 지급된 적이 있었는가?

21.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구제책

법적 지표
1. 환경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가 있는 구제책을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2. 환경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구제책이 지체없이 적용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3. 임시 및 또는 최종 금지 명령 구제가 법률상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가?
4. 구제책으로서의 보상금이 법률 하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5. 구제책으로서의 반환이 법률하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6. 구제책으로서의 복원이 법률 하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시행 지표
1. 지난 5년 내에 환경 또는 천연 자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재판소·기타 사법 기관에서 명령·중지명령·금지 명령 등을 내린 적이 있는가?

22. 효과적인 시행

법적 지표
1. 환경과 관련된 형사법원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2. 환경과 관련된 형사법원의 결정을 시의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3. 환경과 관련된 민사법원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4. 환경과 관련된 민사법원의 결정을 시의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5. 환경과 관련된 행정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6. 환경과 관련된 행정결정을 시의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23. 구제책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법적 지표
1. 환경과 관련된 법정 절차에 대해 국가나 국가기관 등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2. 법정 외의 기관에서 진행되는 환경 관련 사안에 검토 절차가 있을 때, 이에 대해 국가나 국가 기관 등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가?

시행 지표
1. 법정 절차에 대하여 국가 언어로 쓰여져 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최고 법원 또는 국가의 가장 높은 환경 기관의 웹사이트 상에 게재되어 있는가?

24. 사법 및 행정적 결정에 대한 대중의 열람권

법적 지표
1. 환경과 관련된 사법적 결정에 대하여 모든 이가 열람가능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2. 행정 기관이 내린 환경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모든 이가 열람가능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3. 기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내린 환경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모든 이가 열람 가능하도록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시행 지표
1. 법원, 재판소 또는 기타 사법기관이 내린 최근 3개의 환경 또는 천연 자원과 관련된 결정들이 온라인 상이나 해당 법원, 재판소 등의 기관 사무소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가?

25. 지표 없음

26.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적 분쟁 해결

법적 지표
1. 환경 관련 정보·공공참여·환경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접근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2. 적절한 사례에 대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을 적용할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는가?

시행 지표
1. 지난 5년간, 환경 또는 천연 자원과 관련된 공익의 사례가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중재 및 조정 등)으로 해결된 적이 있는가?

Ⅲ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III /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2019. 11. 28 (목)
고정근(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목 차

1	설문개요 및 응답자 현황
2	환경정보의 접근권
3	환경의사결정에서의 공공의 참여
4	환경 사법 접근권
5	고찰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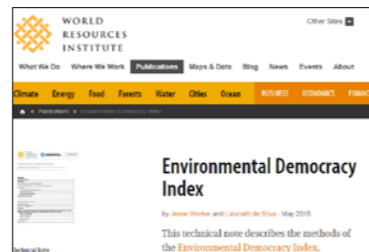


설문개요 및 응답자 현황

1.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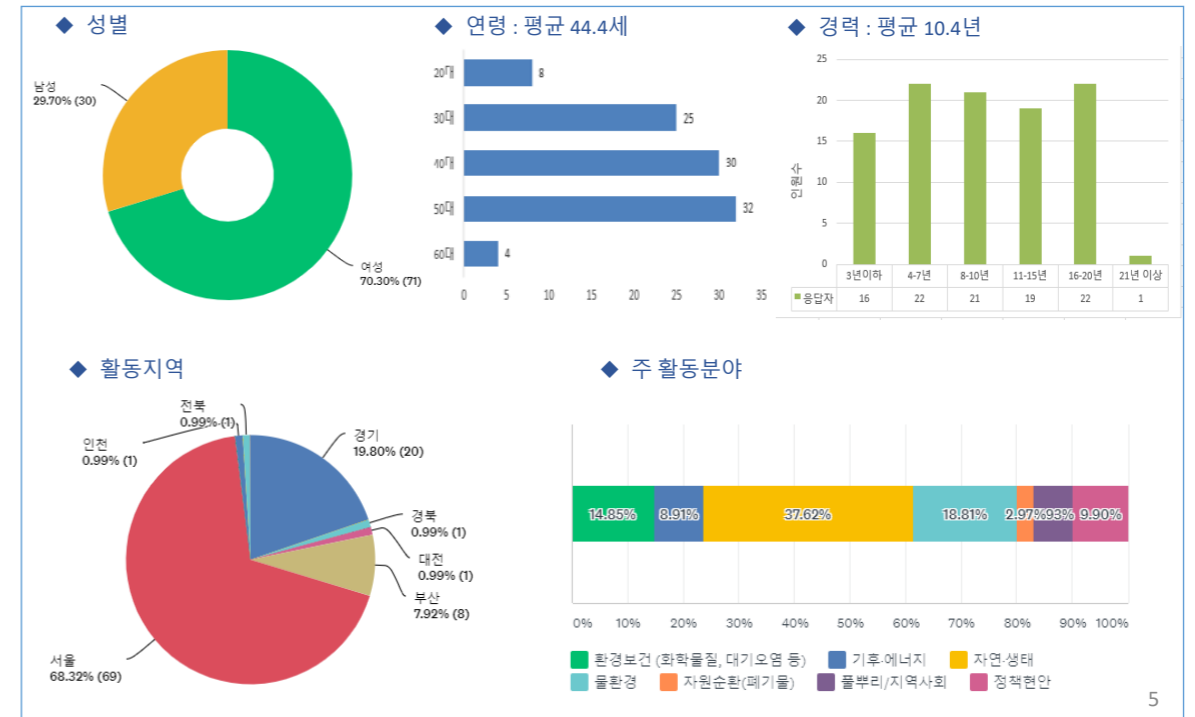
- 국내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해 1)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한 **법률전문가 평가**, 2)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활동가 평가**를 진행함.

- 세계 자원 연구소는 1982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발리 가이드라인 이행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하였고, 2015년 세계 70여 국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 분석.
- 환경민주주의 지표는 정보접근권, 공공참여 및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접근권 각 분야에 걸쳐 법적 지표 75개와 실행지표 24개로 구성
- 설문조사는 환경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필요한 법·제도 및 운영상의 조건을 현장활동가들에게 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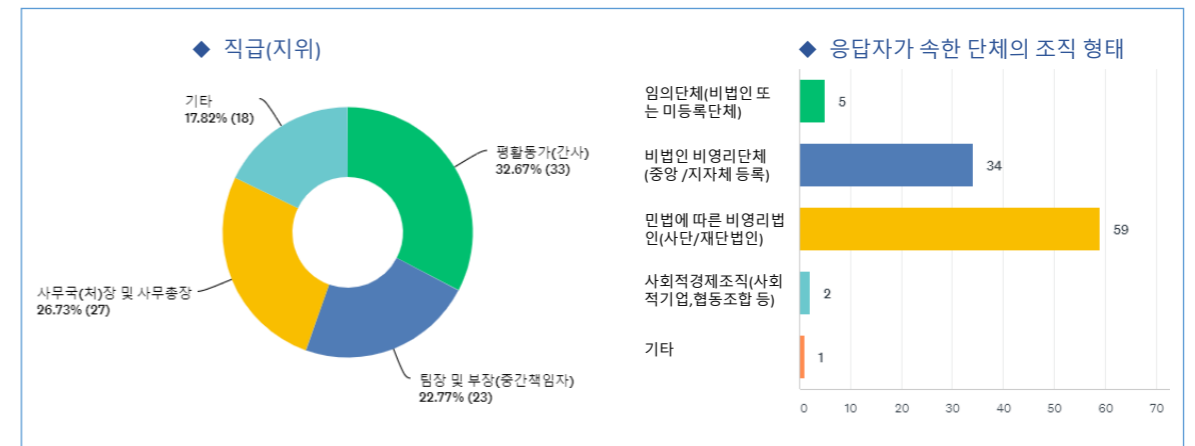


- 설문구성 : 총 44문항
 - 응답자 현황(7), 환경정보의 접근권(14), 환경의사결정에서의 공공의 참여(14), 환경 사법 접근권(9)
- 설문대상 : 환경관련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 설문기간 : 2019.10.30~11.16 (18일)
- 설문방법 : 온라인 (서베이몽키)
- 총 응답자수 : 101명 (완성률 75%)

2. 응답자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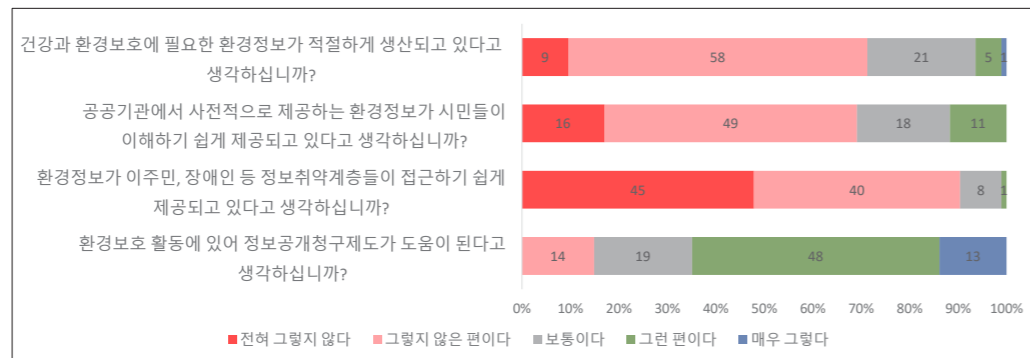
2. 응답자 현황(2)





환경정보의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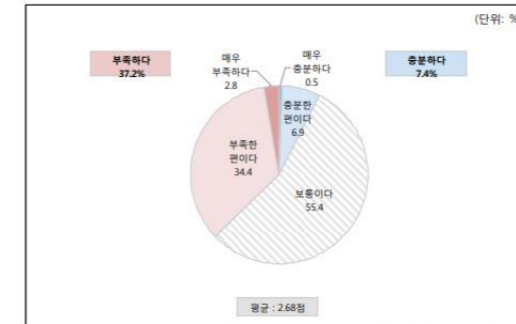
1. 환경정보 접근성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1)



- 이주민 등 정보취약계층들이 접근하기 쉽게 환경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90.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보호에 필요한 환경정보가 적절하게 생산되고 있지 않다(71.3%),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지 않는다(69.1%)고 평가함.
- 활동가들은 환경보호 활동에 있어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 (긍정 응답률 64.9%)

1. 환경정보 접근성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2) : 선행연구

- 일반국민, 환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충분하다 보다 다소 높음
 - 일반국민의 7.4%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매우 충분하다 + 충분한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 + 부족한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37.2%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 평균은 매우 충분하다(5), 충분한 편이다(4), 보통(3), 부족한 편이다(2), 매우 부족하다(1)을 점수화하여 평균화한 값임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 정보격차 실태 : 2018년 4대 정보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8.9% 수준. (일반국민을 100으로 할때)
 -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 격차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불평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이기호, 2019).
 - 디지털 정보화 수준=디지털접근(0.2)+디지털역량수준(0.4)+디지털활용수준(0.4)
 -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수준을 100으로 볼 때, 4대 취약계층은 68.9%이며, 세부적으로 디지털 접근(기기보유 등)은 91%로 일반국민 근접하지만, 역량(컴퓨터 및 모바일 이용능력)은 59% 수준으로 상당히 낮음.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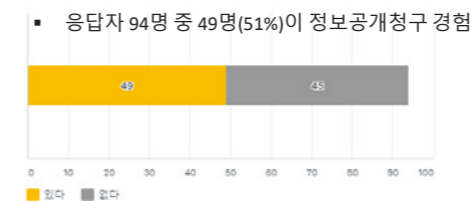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애인	62.5	65.4	70.0	74.6
저소득층	74.5	77.3	81.4	86.8
농어민	55.2	61.1	64.8	69.8
장노년층	45.6	54.0	58.3	63.1
평균	52.4	58.6	65.1	68.9

※ 대비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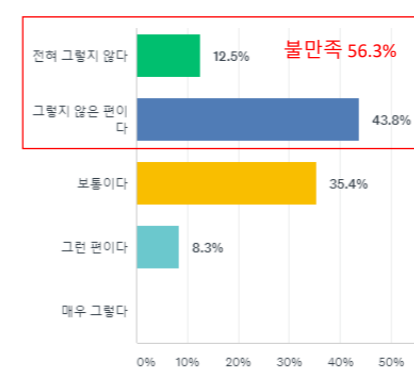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2. 정보공개 청구 경험과 만족도(1)

- 환경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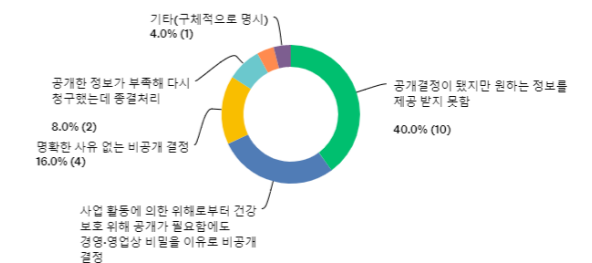


-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만족도



-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 이유

- 공개결정이 됐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40%)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 (28%)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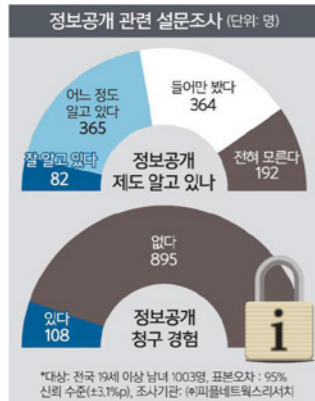
보기	응답
공개결정이 됐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1)	40.0% 10
사업 활동에 의한 위해로부터 건강 보호 위해 공개가 필요함에도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5)	28.0% 7
명확한 사유 없는 비공개 결정 (4)	16.0% 4
공개한 정보가 부족해 다시 청구했는데 종결처리 (2)	8.0% 2
납득할 수 없는 정보부존재 결정 (3)	4.0% 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7)	4.0% 1
비공개사유에 포함된 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하지 않고 일괄 비공개 결정 (6)	0.0% 0
총계	25

2. 정보공개 청구 경험과 만족도(2) : 선행연구

※ 세계일보/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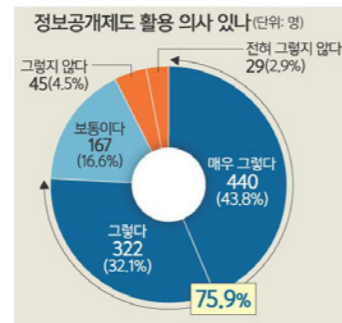
◆ 일반국민 정보공개 청구 경험 10.8%

- 국민 알 리 증진을 위해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정보공개제도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은 8.2%에 불과, 전혀 모르거나 들어만 봤다가 과반을 넘음.
- 정보공개 제도는 공식 문화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치임. 일상에서 활용하는 문화 정착 중요(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 교수)



◆ 정보공개 활용의사 76%

- 정보공개 청구 경험은 낮지만,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해보려는 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



◆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 5회 이상 청구 27명에 물어보니 89% “공무원 정보공개제도 몰이해”/“근거 없는 비공개 처리 경험”
- 공공기관의 자의적, 악의적 정보 감추기 행태를 고치기 위해 처벌조항 신설, 공무원 대상 교육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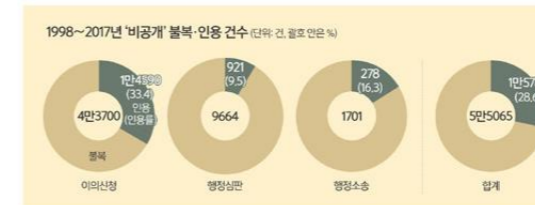
정보공개 청구인들이 겪은 문제점



3. 비공개 결정(2) : 선행연구

◆ 비공개 불복 인용률 평균 28.6%

-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
-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 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 천건이 비공개



-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

※ 자료 : 세계일보/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인용

◆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 '17.4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중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632	발의연월일	2017. 4. 6.
발의자	신창현·박정·문비옥·김영주·권미희·김종민·김병기·노용래·우원석·위성관·소병훈·김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2011년부터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민적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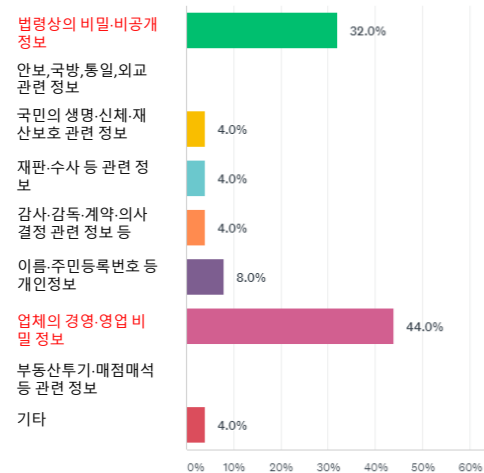
실제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많은 정보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제공될 때 화학물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나 소비자에 대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3. 비공개 결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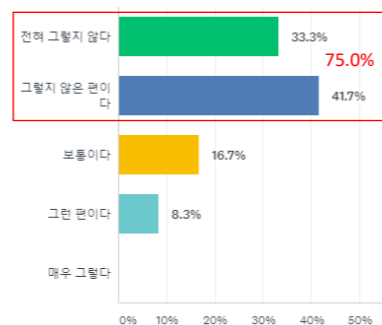
- 정보공개청구자 중 비공개 결정 경험자는 53%(26명)
- 비공개 사유로 업체의 영업비밀(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32%)였음.
- 비공개 사유에 대해 92%가 수긍할 수 없다고 응답

◆ 비공개 사유



◆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 비공개결정 경험자(26명) 중 12명(46%)은 불복하여 구제절차를 밟음. (이의신청 8명, 행정심판 2명, 행정소송 2명)
- 비공개결정 불복절차가 환경정보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5%



4. 소결(1)

- 환경활동가들의 70% 이상은 환경정보 생산(71.3%) 및 전달의 충분성(69.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90.4%)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일반국민들의 경우 환경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37.2%)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5배 높음. 비록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응답률이 환경활동가보다 낮기는 하지만, 환경활동가들이 환경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경향의 평가 결과라 할 수 있겠음.
- 또한, 국내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이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의 69% 수준으로 낮고, 환경정보에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많고 이주민 등 언어 소외계층을 고려한다면, 활동가들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이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은 ‘환경정보 접근성’의 현존하는 우선순위 문제를 잘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반이 넘는 활동가가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불만족(56.3%)하며, 그 주된 이유로 ‘공개결정이 됐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40%),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28%)을 꼽음. 또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업체의 영업비밀(44%),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32%)를 주된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이러한 비공개 사유에 대해 대부분(92%) 수긍할 수 없다고 응답함.
- 이는 선행조사(정보공개 센터)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세계일보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이 80%가 넘고,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임에도 공공기관(공무원)의 악의적 정보 감추기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보도 내용과 맥을 같이 함

4. 소결(2)

- 종합해보면, 국내 환경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1)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정보(예: 미국 환경청의 독성대기오염물질의 발암위해도 등)의 추가적인 생산·공개, 2) 환경정보 접근권의 격차 해소, 3) 소극적 정보공개 관련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상별조치 등), 4) 생명안전관련 정보의 영업비밀 남용금지 법률 제정(현재 관련법 계류 중)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환경활동가들은 국내 환경정보시스템, 정보공개청구제도 등을 통한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 수준에 대해 10점 만점에 3.64점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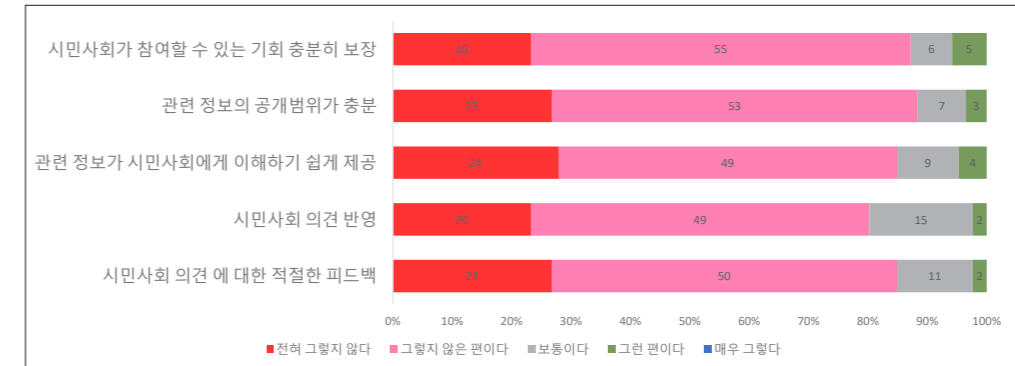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총평>

3.64★

평균 등급



1.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 보장에 대한 평가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활동가의 80% 이상이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보이고 있음.
- 구체적인 이유로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88.4%),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 받지 못한다(87.2%), 관련 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84.9%), 시민사회 의견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없다(84.9%),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80.2%) 순으로 나타남.



환경의사결정에서의 공공의 참여

2. 환경영향평가 참여 경험 : 응답자 중 33명 (38%)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문제점
고기동 습지조사	본인의 전문성부족
원전 하나줄이기 공청회	수치에 대한 현실적 느낌을 느낄 수 없다.
미세먼지	자료공개 미흡
가리왕산	우리의근거가 무시되는 느낌
공청회 참여	요식행위 수준의 내용과 과정
야생동물 서식지-산양	사실상 개발 사업의 주체의 하청을 받고 진행되는 영향평가 구조
구리디자인시티	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경관분야에 참여해 경관만 보라고 제시함
자문회의	자료를 회의 시간에 받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
경인아라뱃길	평가 정보 미흡, 반대 의견 가진 이를 입장시키지 않음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협의
영주댐	영터리 조사, 영주댐으로 인한 환경파괴 미미하다고 작성
가리왕산	환경단체의견 반영 안됨
경인운하	생물상조사
대저대교	사업자의 형식적차상의 환경영향평가
2기 신도시 개발	자연환경 및 생태계조사
섬진댐 여수로	기본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을 일부 보완하게 함은 평가 의미가 없음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건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인 공청회 진행.
부산 대저 대교	생태 자료 부실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부실조사
하천개발사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사, 결과의 상이함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부동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완협의결정을 사업자에게 재 기회가 주어지는 행태
4대강	국민의사무시
아파트 건설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과정
오산용인민자고속도로	업체의 기초자료 조사미비
하천 환경개선공사	일방적 사업결정 및 협의부족
생태보전지역 생태환경조사	환경에 대한 자자체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보전지역 관리 미흡
김포습지	쓰레기매립으로 평가를 방해한점

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선행연구

- ◆ 정보와 전문성 비대칭의 문제 (전동준, 2018)
 - 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이하여 이해관계자 사이 수용 정도에 영향,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 수용성 등에 있어 부실·거짓 논란, 정보격차, 전문성의 비대칭성의 문제
 - 「환경영향평가법」 기본원칙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민의 참여가 원활해야 함을 명시 : 제4조 제3항.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원인>

- 정확성 :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작성, 부실한 대행업체가 전문성 없이 형식적 작성 제출
- 투명성 : 주민의견 수렴절차 생략 또는 부실 진행, 온라인에 전문적 내용만 일방적 공표하고 짧은 기간 의견 수렴
- 공정성 : 평가서 작성 주체가 사업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 전문성 : 주민들 지식으로 평가서 이해할 수 없어, 주민의견 수렴이 불가능한 구조 양산

- ◆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
 -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상당히 형식적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공허한 요식행위화 되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사법부 또한 이러한 의견수렴절차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석인선, 2008)

<환경영향평가설명회·공청회 운영 문제점(조공장 외, 2015)>

- 공청회를 사업자가 주관하니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결국 사업자의 판단대로 처리된다는 점
- 공청회 진행이 쌍방향적 인 토의보다는 각각의 진술과 답변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
- 주민참여 절차 생략 : 설명회 및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도록 한 13조 관련 사항 타당한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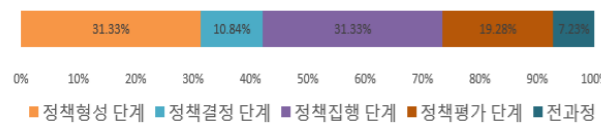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갈등 유발 유형>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 부실/허위 조사	· 정보제공 방법	· 이해당사자 간 가치논란	· 이해당사자의 평가서 이해
· 부실/허위 평가결과	· 정보공개 시기	· 사업자의 평가대행업체 선정	· 이해당사자의 평가서 이해
· 대행자의 전문성	· 정보제공 절차	· 환경영향/위험 인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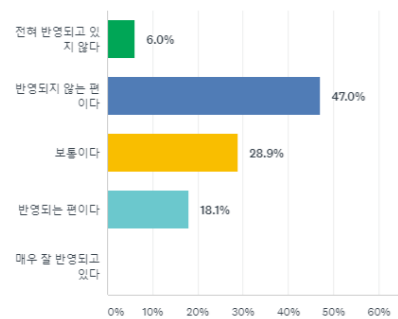
자료: 전동준(2018)

4. 지자체와 환경거버넌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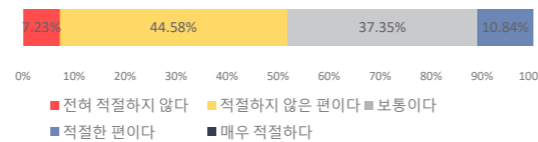
- ◆ 지자체의 환경정책결정에서 시민사회의 주요 참여 단계
 - 정책 결정 이후 집행 및 평가단계 참여가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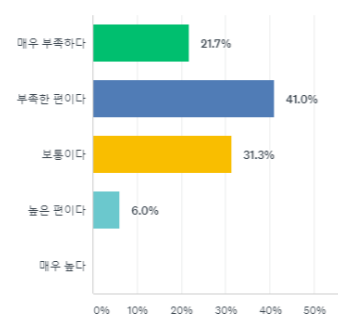
- ◆ 지자체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
 -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정응답률이 53%인 반면에 반영되는 편이라는 18.1%에 불과



- ◆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지자체 대응
 - 부적절 51.8% vs 적절 10.8%



- ◆ 지자체 공무원의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
 - 활동가의 62.7%가 부족하다고 생각



4. 지자체와 환경거버넌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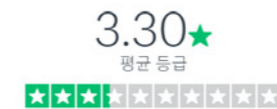
- 지자체 공무원이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지자체 중심의 평가체계. 거버넌스 활동에는 적극적이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활동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부족
- 논의자리에 절대 나오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므로!
-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 이해 부족
- 행정의 오만함
- 간섭받는다 생각한다.
- 어떤 의제보다 우선적 순위를 가지지 못 하고 있다
- 배경지식의 부재, 예산 집행, 민원 등으로 여건상 고려 어려움
- 일 목적이 달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무원 속성상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꺼려함
- 입장 차이
- 부서이동
-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 분들은 대체로 협조적이다. 그럼에도 업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 이유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인것 같다.
-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여 법률에서 지정한 부분에서만 형식적인 미팅형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
- 본인 외에 다른 주체의 참여에 대해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음.
- 환경관련 현안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 소통 과정에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많이 느낌. 실적 쌓기, 보여주기에 급급한 경우 많음.
- 공무원에게 거버넌스는 단계로서 의견청취 정도이고, 실제 반영은 잘 안되기 때문
- 공무원 그 자신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공무원조직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구조로 인해 그 공무원이 더 일을 못함
-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전혀 없음. 감질. 협력의 예의가 없음
- 거버넌스의 구성자체, 거버넌스의 실행 등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 형식적인 거버넌스 구성이 많다고 생각함. 절차적 민주주의를 최소한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그정도가 시민사회가 바라는 거버넌스인지는 의문. 정책의제 선정부터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봄.
- 사업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보다 관료조직의 눈치를 살피고 적극성이 없음
-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부족
- 과정이 아닌 결과, 통보식 협의 회의 등 운영
- 공무원만 문제가 아니라 환경단체들이 거버넌스에 대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버넌스 차려진다 해도 매번 정부에 팽만 당한다. 큰 환경단체와 정부가 공개된 논의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불투명 하게 야합하는 경우가 많은게 문제
- 생각자체가 없음
- 시민단체 의견의 적극적인 반응이 부족하다고 생각

5. 소결

- 현장활동가의 80%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보이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해본 활동가들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공정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요식행위로 치르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함
- 이는 전동준(2018)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작성, 정보격차, 전문성의 비대칭 문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공허한 요식행위화 되어 있고 사법부 또한 이러한 의견수렴절차에서 절차상 하자 문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석인선, 2008) 등과 일치하는 평가로써 향후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
- 지자체의 환경거버넌스에 대해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거버넌스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공개 요구에 지자체의 대응이 부적절하며, 실제 담당 공무원의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62.7%)고 평가함.
- 공무원의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의지 부족에 대한 이유로 공무원 본인 이외의 다른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업무에 불필요하고 귀찮아 하면서 매우 형식적인 과정만 밟는다고 봄. 한편, 시민사회단체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거버넌스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며, 때로는 일부 메이저 단체 중심으로 정부와 야합하는 행태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음.
- 환경활동가들은 환경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의 참여 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3.30점으로 평가. 정보접근권 보장(3.64점) 보다 조금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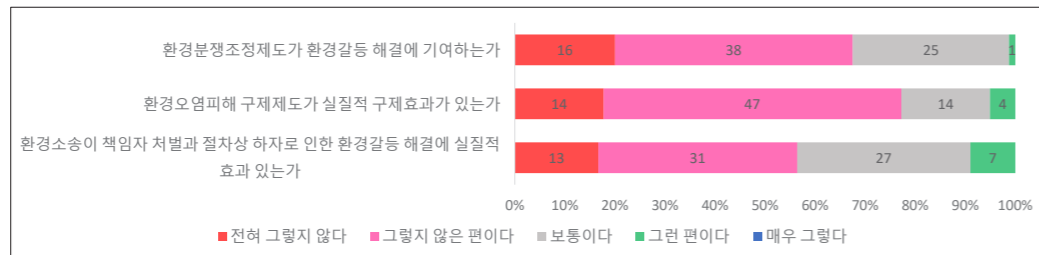
<환경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의 참여 보장에 대한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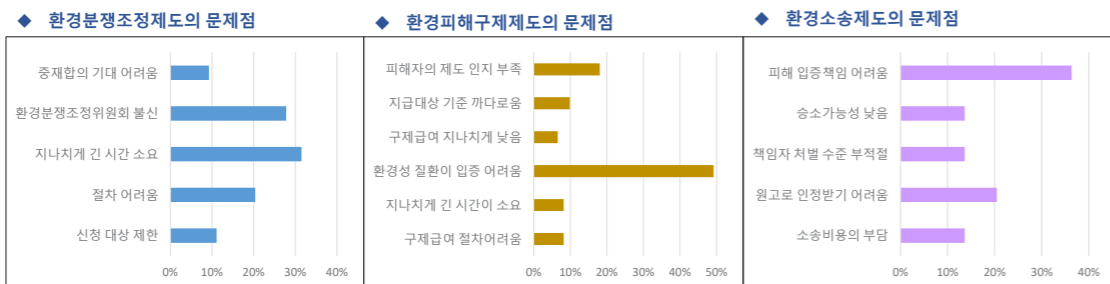


환경 사법 접근권

1. 환경 사법 접근권 관련 제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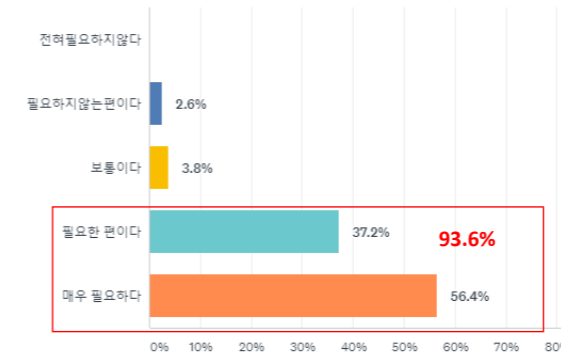
- 활동가들은 환경 사법제도 중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의문(부정 응답 77.2%)을 품었으며,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환경갈등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67.5%
-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으로 환경성 질환 입증의 어려움(4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지난친 긴 시간 소요(31.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성 문제(27.8%)를 지적했으며, 환경소송은 피해사실 입증 책임의 어려움(36.4%), 원고적격 문제(20.5%)를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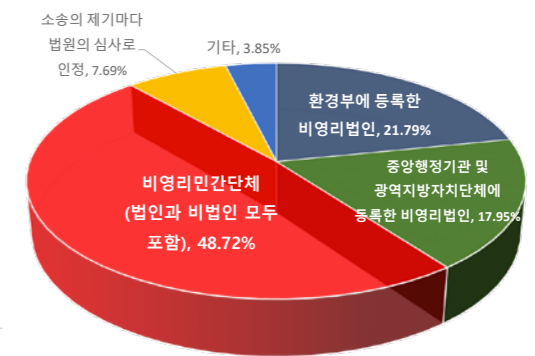
2.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 활동가들은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93.6%가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환경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환경단체에게 원고의 자격을 부여할 때 단체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사안임. 단체요건을 엄격히 할 경우 남소를 방지 할 수 있고, 요건을 넓힐 경우 환경소송의 문턱을 낮출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대한 활동가들의 의견은 법인과 비법인을 모두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확대 하자는 의견이 48.7%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두자는 의견(39.7%)보다 많았음.

◆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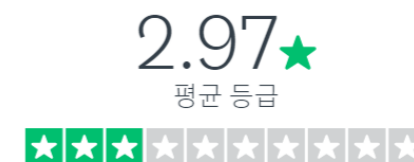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시 원고자격 요건



3. 소결

- 활동가들은 환경 사법제도 중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함.
-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으로 환경성 질환 입증의 어려움(4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지난친 긴 시간 소요(31.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성 문제(27.8%)를 지적했으며, 환경소송은 피해사실 입증 책임의 어려움(36.4%), 원고적격 문제(20.5%)를 꼽음.
- 활동가들은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93.6%가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단체 원고 자격에 대해 법인과 비법인을 모두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48.7%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두자는 의견 (39.7%)보다 많았음.
- 환경활동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2.9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정보접근권 보장(3.64점), 공공참여(3.30점)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1)

- 환경정보의 접근권에 대한 평가에서**, 환경활동가들의 70% 이상은 환경정보 생산(71.3%) 및 전달의 충분성(69.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90.4%)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정보공개청구 경험이 있는 활동가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불만족(56.3%)하며, 그 주된 이유로 '공개결정이 됐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40%),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28%)을 꼽음. 또한, **업체의 영업비밀(44%),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32%)**이 주된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대부분(92%) 수긍할 수 없다고 응답함.
- 환경의사결정에서의 공공의 참여에 대한 평가에서**, 현장활동가의 80%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부실한 조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요식행위로 치르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청회/설명회, 전문성의 비대칭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함
- 지자체의 환경거버넌스에 대해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거버넌스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공개 요구에 지자체의 대응이 부적절하며, 실제 담당 공무원의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62.7%)고 평가함. 공무원의 의지 부족에 대한 이유로 **공무원 본인 이외의 다른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귀찮아 하면서 매우 형식적인 과정만 밟는다고** 봄.
- 환경 사법제도의 접근권에 대한 평가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77.2%)를 가장 많이 제기함.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으로 환경성 질환 입증의 어려움(4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지난친 긴 시간 소요(31.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성 문제(27.8%)를, 환경소송은 피해사실 입증 책임의 어려움(36.4%), 원고적격 문제(20.5%)를 꼽음.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대부분 필요하다(93.6%)고 응답. 단체 원고 자격에 대해 법인과 비법인을 모두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48.7%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두자는 의견(39.7%)보다 많았음

1. 요약 및 결론(2)

- 이상에서 살펴본, 활동가 대상 환경민주주의 설문 결과는 정보접근권,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부딪히는 적극적 이해관계자로서 관련 문제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봄.
- 앞서 발표된 환경민주주의 3대 구성요소에 대한 법률 전문가 평가 결과, 3점 만점을 기준으로 의사결정 참여권이 가장 낮고(0.81), 그 다음으로 사법적 접근권(1.65), 정보접근권 (1.99)순으로 낮은 반면에, 환경활동가들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사법적 접근권(2.97)이 가장 낮고, 의사결정 참여권(3.30), 정보접근권(3.64) 순이었음.
- 이는 현장에서 환경문제를 대응하는 활동가 입장에서 마지막 대응 방법이 사법적 구제에 기대는 것인데, 원고적격,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 비용 등 문제로 사법적 접근 자체가 더 큰 장벽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음.
-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약 60%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소송 요건에서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48.7%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두자는 의견(39.7%)보다 많은 점은 향후 관련 논의에 있어 주요하게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음.

IV

토론문





환경민주주의 평가 <정보접근권>에 대한 의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 환경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정보에 대한 평가 결과

항목	한국		리투아니아		미국		중국		일본	
	점	%	점	%	점	%	점	%	점	%
정보 접근권	1.99	66	2.68	89	2.36	79	1.76	59	1.96	65
의사결정 참여권	0.81	27	2.08	69	2.08	69	1.06	35	1.11	37
사법적 접근권	1.65	55	2.41	80	2.05	68	1.23	41	1.47	49

- 66점, 55점, 27점의 의미 : 접근권은 있지만 참여권은 없다
- 민주주의를 위한 시스템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를 기준으로 한 정부운영 패러다임 : Gov1.0 / Gov2.0 / Gov3.0
 - 민간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공공정보를 공개해 정부 행정의 공익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개념
 - 전통적 형식의 '자판기 정부'를 탈피해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공공정보의 생산, 공유,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부
 - ①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한 행사에서 탈피하는 장
 - ② 통제가 아닌 협력을 위한 장
 - ③ 정보가 참여적, 개방적으로 생산, 관리, 공유되는 장
 - ④ 혁신과 창조의 장

■ 정보접근권 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2차 평가 기준)

항목	지표	점	%
정보 접근권	1. 이해관계 증명 없이 정보요청 할 수 있는가	2.67	89
	2. 공공영역의 환경정보	2.25	75
	3. 거절의 근거	1.67	56
	4.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	2.33	78
	5. 환경상태 보고서	2	67
	6. 조기경고정보	1	33
	계	1.99	66

(1) 이해관계 증명 없이 정보요청 할 수 있는가

- 정보접근 권한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있지 않다.
 - 환경정책기본법, 정보공개법 조항 상 정보공개 대상을 ‘국민’으로 제한 (심지어 정부개헌안에 새롭게 신설한 내용에서도)
 - 정보공개법 상에서 외국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적 보장
 -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이에 준하는 고유번호) 제출 필수
-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의 기준인 ‘실비’는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 (2017정보공개법 개정안)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더욱 활성화
- 정보공개 처리기간 최대 20일. 행정심판은 최대 90일. 그러나 180일 넘는 경우 부지기수

(2) 공공 영역의 환경 정보

- 모든 공공기관에 환경정보 공표의 의무가 있는가

→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 지자체의 환경 담당 과 등 환경관련 고유업무를 하는 기관의 공표는 필요. 그런데 국공립대학교도?

- 사전공표의 모호함 (내용, 형식)

→ 정보공개법 상 공표대상 정보

-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정보공개법은 ‘보유 및 관리’정보에 제한. 공공기관이 갖고 있지 않은 환경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방법 부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아닌 “공공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의 상상

(3) 거절의 근거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내용의 모호함

- 공개의 실익과 비공개 실익을 비교해 판단 할 때의 근거로 충분인가
- 정보를 요청한 이에게 거절할 때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나

- ①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정보
- ② 국익(안보, 국방, 통일, 외교)에 침해될 수 있는 정보
- ③ 공익(국민의 재산, 신체, 생명)에 침해될 수 있는 정보
- ④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및 관련된 정보
- ⑤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등 공개 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⑥ 개인정보
- ⑦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 ⑧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1호와 5호(의사결정과정) 비공개가 꼭 필요한가?

→ ‘국가안보’, ‘영업비밀’, ‘업무에 지장’ 을 구체화해야 함

(4)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

- 정보의 공개에서 데이터의 개방으로 변화하고 있다.
- 정보의 품질은 신뢰할 만한가
- 혹시라도 있을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식별화 하는가
- 정보의 제공시 기계가독형으로 제공하는가
 - 2014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혁명’ 데이터혁명을 위한 9가지 핵심원칙

(1) 데이터의 품질과 진실성 (Quality and Integrity)

- 공공 데이터(official data) 품질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적 시스템 및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제3 기관의 정기적 감사 필요

(2) 데이터 세분화 (Disaggregation)

- 여러가지 기준(지리, 소득, 장애, 성별, 아니)으로 데이터 분류
- 다양하고 현실적인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반드시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며 진행되어야 함

(3) 데이터의 시의성 (Timeliness)

- 시의적절한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 강조
- 데이터가 늦게 발행되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다(Data delayed is data denied)
- 데이터 주기는 더 나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의 의사결정주기와 연계되어야 함.

(4)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개성 (Transparency, Openness)

- 공공에 관련된 사실과 공공기금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그것이 설명 사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개’ (open by default) 되어야 함

(5) 데이터의 가용성과 큐레이션 (Usability, Curation)

- 사용자 중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함
- 정보전달자는 기술에 친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정보를 활용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 시켜야 함

(6) 데이터의 보호와 사생활 존중 (Protection, Privacy)

- 국가기관의 정보요청, 해킹 등으로 사생활문제 대두되는만큼 확실한 국제적 기준, 강력한 국별 정책과 법률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서 사생활 보호에 대응해야 함
-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뿐 만 아니라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해야 하는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7) 데이터 거버넌스와 독립성 (Governance, Independence)

- 국가에서 데이터를 담당하는 곳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8) 데이터 자원과 활용능력 (Resources, Capacity)

- 모든국가(특히 개도국)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전세계가 공동의 기준을 가지고 책임있게 협조해야 함.
-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전 세계적 공동 기준 마련 및 공공선을 위한 빅 데이터의 활용

(9) 데이터에 대한 권리 (Data Rights)

- 한 개인이 국별 데이터에 포함되어 정당한 정책 대상으로 인정받는 권리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가 사용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자유, 참여의 권리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
- 데이터의 생산, 유통,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해야 함

(5) 환경상태 보고서

- 환경상태 보고서 공개의 근거를 사전정보공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 사전정보공표항목은 ‘주기와 시기’를 정하고 그에 맞게 공표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6) 조기 경고 정보

- 환경관련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매뉴얼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
- 재난 대응책 마련 과정에 이해관계자(주민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환경민주주의 평가발표회 토론문

이상현(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1.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지수 중에서 의사결정참여권 항목의 지수가 미국(2.08), 리투아니아(2.08), 일본(1.11)은 물론이고, 중국(1.06)보다 낮은 0.81을 기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최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환경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기회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2.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원 또는 배출위험 시설 입지 결정 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이 예기치 못하게 겪게 될 수도 있는 환경 오염·훼손에 따른 건강·재산상의 피해 및 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 1) 오염물질 배출원 또는 배출위험 시설 입지 결정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입지 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반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 2) 이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원 또는 배출위험 시설 입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결정 사항도 주민투표 대상이 되도록 ‘주민투표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함. 그리고 동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고, 동법 제8조에서 정부기관이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뿐임

3. 환경부정의가 발생하거나 환경권 보장이 미흡한 지역, 즉 환경 오염·훼손 피해 및 위험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 1)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위험시설의 위치 정보를 공간화시키고, 소지역(격자 등)을 단위공간으로 하여 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소지역 단위공간별 인구 속성, 특히 연령, 소득, 주거환경 등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관련 질환 발생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간화시킴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원 또는 배출위험시설 주변의 환경 오염 피해 및 그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해야 한다.
- 2) 이를 위해, 정부 컨트롤타워⁷⁾의 총괄 하에, 환경 오염 배출원 및 배출위험 시설, 인구의 사회경제적 속성 또는 주거 미 근린 환경 속성, 오염물질 관련 질환 발생, 오염물질 배출, 자연환경 훼손 등에 관해 다양한 기관 및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 3) 또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지점을 대폭 늘림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게 해야 한다.
- 4)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지역, 특히 환경정의 및 환경권 보장이 미흡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포착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피해 발생 확인 시 그에 대한 구제대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 5)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해, 개별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춰 환경정의 및 환경권 보장 시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지자체 간 협력 하에 해당 시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 6) 무엇보다도 이상과 같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에 모든 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야하고, 더 나아가 모니터링 체계 운영 자체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 7) 정부 컨트롤타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환경부의 현재 위상과 권한으로는 기재부나 산자부, 국토부 등에 대해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나 정책 협조를 얻어낼 수 있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안별로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미세먼지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현재 컨트롤타워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통령자문회의도 있는 반면, 미세먼지보다 더 포괄적인 대기오염관리는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사법적 접근권 관련 환경민주주의 평가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

1. 개요

환경갈등의 해소를 위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이다. 환경갈등은 개발과 보전, 편익과 안전 등 이념화 된 가치관 간의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조정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환경갈등의 적절한 해소는 결국 의사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그 성공 여부가 달려있고, 절차적 정의,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과 같은 관념들의 환경법 체계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비슷한 이유로 적절한 사법적 구제수단의 확립도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 사법적 접근권 관련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

가. 환경 정보요청 청구 (3점)

- 환경정보에 대한 요청이 반려된 경우 구제절차를 법률에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
- 정보공개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나. 공공참여 항소 (1점)

- 환경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체법상, 절차상 적법성에 대해 관련된 대중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만 청구인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인정

다. 국가 또는 민간차원의 행위에 대한 대중의 이의제기권

- 국가 등을 상대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민간을 상대로는 민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
- 소송 등을 통한 이의제기는 가능하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제한이 있음(2점)
- 특히 절차적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는 소의 이익 등 측면에서 더욱 까다로움(1점)
- 대부분 시민단체가 인근 주민 등의 피해자를 모집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음
- 시민단체 자체가 원고가 된 경우는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움

라. 환경문제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

- 환경상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주민에게만 인정(1점)

마. 법원 또는 기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을 통한 독립적인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 (1점)

- 일단 환경과 관련된 결정들이 시행되면 행정심판 등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존할 수 있을 뿐 독립적이거나 공정한 기관을 통한 시의적절한 검토절차는 미흡
- 환경부에서는 공개/비공개, 사전/사후 정보를 구분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놓음
- 하지만 행정청이 수행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 근거 개별 법률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바. 환경과 관련된 사건들에 있어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구제책이 있는지 여부(1점)

- 민사관계에서 주요한 예방수단인 유지청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 행정사건에서도 집행정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 환경피해에 대하여 긴급한 구제와 즉각적인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 충분하지 않음
- 소송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음

-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사.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적 분쟁 해결(1점)

-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민사조정법상의 조정, 중재법상의 중재를 보면 환경피해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률에 보장
- 반면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침해와 대중참여권 침해에 대하여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가. 환경문제에 관한 사법액세스권

- 오르후스협약 제9조는 환경문제에 관한 사법액세스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오르후스협약 제9조는 3가지 유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체약국은 협약 제9조 제4항이 규정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공정 또는 공평, 저비용'이라는 요건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함.

나.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 환경단체 소송이 가능하도록 입법 필요
-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93.6%가 압도적으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 오르후스협약은 시민참여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결정에 관한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오르후스협약 제9조 제2항은 '체약국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익이 있는 자 또는 대리인, 체약국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협약 제6조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결정, 작위 또는 부작위의 실제적·절

차적 적법성에 대한 쟁송, 법원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공평한 기관의 심사 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이 규정은 직접적인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익(sufficient interest)을 원고적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도 심사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공익소송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현재보다 완화된 인과관계 인정 필요성

- 환경오염피해는 그 원인의 복잡성, 누적성 및 광범위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정보 불균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불법행위와 같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피해자를 매우 불리하게 만들.
-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주민들에게서 건강상 이상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건강이상자에 대한 구제 또는 지원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은 물론이고 환경보건법에서도 건강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법상 구제 또는 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건강피해에 대한 민사법상 구제요건을 완화하고 오염원인자의 구제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는 무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들 규정만으로는 입증책임 등 건강피해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충실한 구제를 추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청구 사례는 많지 않음.

라. 기타

- 환경피해에 대한 긴급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필요
- 환경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V

부록

- 환경민주주의 평가위원
-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활동가 설문지



환경민주주의 평가위원

구분	평가위원
1차 평가위원	김상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성훈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 변호사 김지은 기후솔루션 변호사 박창신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변호사 배영근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이대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세린 변호사 임소진 가울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정윤 변호사 전정환 법률사무소 전승 변호사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외
2차 평가위원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 前 환경법학회 회장
시민 평가단	환경활동가 101명

부록 / 한국의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활동가 설문조사 ▶▶▶▶▶

한국의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활동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는 1999년 환경정의포럼으로 출발하여 국내에 최초로 환경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환경정의 법제화와 환경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환경정의의 부설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환경정보의 접근성, 의사결정에서의 공공의 참여, 환경문제에서 사법적 접근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환경민주주의의 국내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한국의 환경민주주의 진단 및 증진을 위한 실천과제 개발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 결과만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조사주관기관 :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

연구자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국장) sims@eco.or.kr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kjk@eco.or.kr
 박희영 (환경정의연구소 연구원) heey@eco.or.kr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응답자 현황 (8)

A1. 귀하의 법적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A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1974년생인 경우 "1974" 입력)

_____년(리스트 선택형)

A3. 귀하는 올해까지 몇 년 동안 환경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중간에 쉬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 (예: 15년인 경우 "15" 입력)

총 ()년(주관식)

A4. 귀하가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주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강원 ② 경기 ③ 경남 ④ 경북 ⑤ 광주 ⑥ 대구 ⑦ 대전 ⑧ 부산
- ⑨ 서울 ⑩ 세종 ⑪ 울산 ⑫ 인천 ⑬ 전남 ⑭ 전북 ⑮ 제주 ⑯ 충남
- ⑰ 충북

A5. 귀하가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가장 중심적인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 ① 환경보건 (화학물질, 대기오염 등)
- ② 기후·에너지
- ③ 자연·생태
- ④ 물환경
- ⑤ 자원순환(폐기물)
- ⑥ 풀뿌리/지역사회
- ⑦ 정책현안
- ⑧ 기타

A6. 소속 단체에서 현재 귀하의 직급(직위)은 무엇입니까?

- ① 평활동가(간사)
- ② 팀장 및 부장(중간책임자)
- ③ 사무국(처)장 및 사무총장

④ 기타

A7. 귀하가 속한 단체의 조직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임의단체(비법인 또는 미등록단체)
- ② 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앙정부 또는 자자체 등록)
- ③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 또는 재단법인)
- ④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⑤ 기타

B. 환경정보의 접근성

B1. 귀하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환경정보가 적절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B2. 귀하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환경정보(예, 대기질, 수질, 화학물질 등)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B3. 귀하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환경정보(예, 대기질, 수질, 화학물질 등)가 이주민,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들이 접근하기 쉽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B4. 귀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B5. 귀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환경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B5-1로 이동)
- ② 없다

B5-1. 귀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 받은 정보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B5-1-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B5-1-1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B5-1-1. 귀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 받은 정보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개결정이 됐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함
- ② 공개한 정보가 부족해 다시 청구했는데 종결처리
- ③ 납득할 수 없는 정보부존재 결정
- ④ 명확한 사유 없는 비공개 결정
- ⑤ 사업 활동에 의한 위해로부터 건강 보호 위해 공개가 필요함에도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 ⑥ 비공개사유에 포함된 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하지 않고 일괄 비공개 결정
- ⑦ 기타 () 주관식

B5-2. 귀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B5-2-1로 이동)
- ② 없다

B5-2-1. 귀하가 통보 받은 비공개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②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
-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 ④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⑥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⑦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⑧ 업체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 ⑨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⑩ 기타() 주관식

B5-2-2. 귀하는 비공개결정을 받았을 때 비공개 사유에 대해 수궁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B5-2-3. 귀하는 비공개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밟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B5-2-3-1로 이동)
- ② 없다

B5-2-3-1. 귀하는 비공개결정 불복구제절차를 어디까지 밟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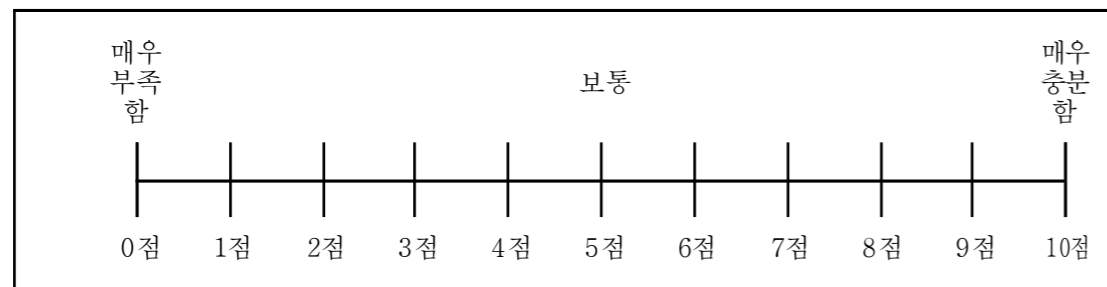
- ① 이의신청
- ② 행정심판
- ③ 행정소송

B5-2-3-2. 귀하는 비공개결정 불복구제절차가 환경정보의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B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환경정보시스템,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 환경의사결정에서의 공공의 참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 부분>

C1. 귀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가(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C2. 귀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범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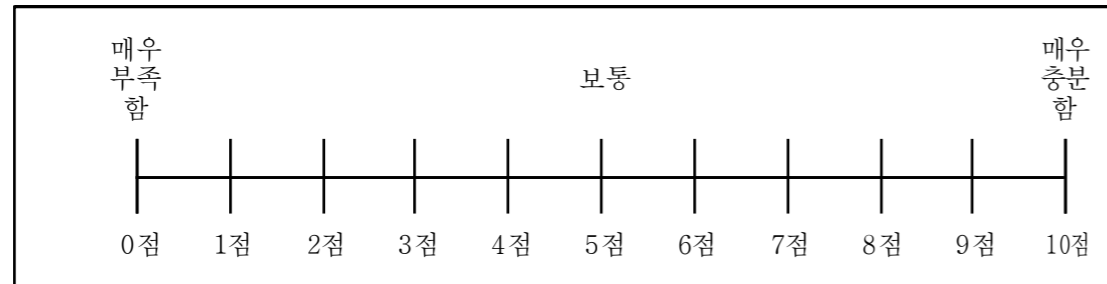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C3. 귀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가(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C4. 귀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 ②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D. 환경 사법 접근권

D1. 현재 정부는 환경갈등 발생 시에 당사가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충분히 신뢰 받으며 환경갈등 해결에 적절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D1-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D1-1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D1-1. 귀하가 환경분쟁조정제도 시행이 환경갈등 해결에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청 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 ②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③ 해결되기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됨
- ④ 피해배상 규모가 적절하지 않음
- 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음 (독립성, 공정성 등 신뢰문제)
- ⑥ 중재합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 ⑦ 기타 () 주관식

D2. 정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가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D2-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D2-1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D2-1. 귀하가 환경오염피해 및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가 실질적 구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구제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② 구제급여 지급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됨
- ③ 환경성 질환이 입증 어려움
- ④ 구제급여 지급 규모가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낮음)
- ⑤ 구제급여 지급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움
- ⑥ 환경오염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및 배상책임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함
- ⑦ 기타 () 주관식

D3. 환경피해 발생 시 오염원인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제도가 환경피해 책임자 처벌과 절차상 하자로 인한 환경갈등 해결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D3-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D3-1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D3-1. 귀하가 환경소송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소송비용의 부담 (패소 시 비용 부담 등)
- ② 환경소송의 원고로 인정받기 어려움
- ③ 책임자 처벌 수준이 적절하지 않음
- ④ 승소가능성이 낮기 때문
- ⑤ 피해사실 입증책임의 어려움
- ⑥ 적절한 소송대리인 선임의 어려움
- ⑦ 기타 () 주관식

D4.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과 관련된 환경소송에서 환경시민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공익적 환경소송에서 환경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인정을 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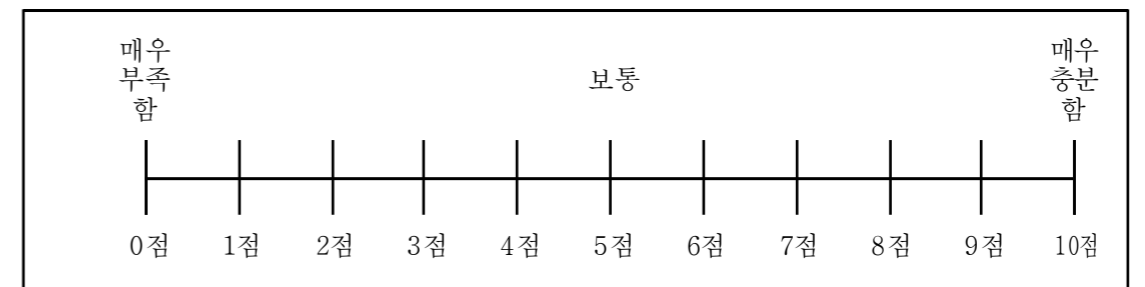
로 하는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한 편이다
- ⑤ 매우 필요하다

D5.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하여 환경단체에게 원고의 자격을 부여할 때 단체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중요 쟁점사안입니다. 단체요건을 엄격히 할 경우 남소를 방지할 수 있고, 요건을 넓일 경우 환경소송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하는 환경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 ②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 ③ 비영리민간단체 (법인과 비법인 모두 포함)
- ④ 소송의 제기마다 법원의 심사로 인정
- ⑤ 기타 ()

D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사법제도가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환경소송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환경피해 책임자 처벌과 환경오염 피해자의 법적 보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2019. 11. 28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eco.or.kr 02-743-4747